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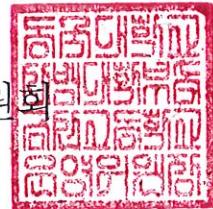
수 신 학교운영위원

(경유)

제 목 2022학년도 제12기 제58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 관련: 금산고등학교-6641(2022.09.15.)
-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제58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58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공고문 1부.
2. 제58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 자료 1부.



동국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담당자 황병호 간사 이상랑 운영위원장 임상원

협조자

시 행 운영위 - 12 (2022. 9. 15.) 접수

우 576-962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7번지 /

전화 (063)543-0721 전송 (063)544-0721 / 공개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 공고 제2022-18호

제58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공고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58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 9. 23.(금) 오전 11:00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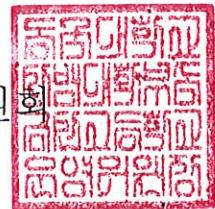
가.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안)

나.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4. 참고사항 :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인사 방청 가능

2022년 9월 15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2022년도(58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금산고등학교

목 차

1.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안)..... 1~2
2.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3~6

안건 번호	12기-22년-58회-41호
----------	-----------------

학교장 추천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안)

제안년월일 : 2022. 09. 23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교 무 부 장

1. 제안이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발방법, 기준 및 단계별 전형요소에 부합된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여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서 접수: 2022년 9월 13일 – 9월 17일

나. 모집 인원

- 1)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학생부 교과 KU지역균형) 1명
- 2)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1명
- 3) 정화예술대 미용예술학부 메이크업전공(특별전형 중 특기자 전형) 1명
- 4) 정화예술대 미용예술학부 미용전공(특별전형 중 특기자 전형) 1명

다. 지원 자격: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 건국대학교: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학생부(교과) 70% + 서류 30%, 추천 인원 제한 없음
- 2) 동국대학교: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학생부(교과) 70% + 서류 30%, 추천 인원 4명 이내
- 3) 정화예술대학교: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학생부 10%, 면접/실기 90%, 추천 인원 제한 없음

라. 선발 기준안 및 선발 순위표

1) 선발 기준안

가)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하고, 피추천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절차에 관계없이 전원 추천하며,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추천 기준을 토대로 선정 추천한다. 단, 교내·외 징계와 무단결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 추천한다.

나) 심사 기준은 각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과 및 비교과 내신 산출 기준에 맞추어 희망 학생들의 내신을 산출하여 추천학생을 결정한다.

다) 추천 인원이 통합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정 구분 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서로 추천한다. 이때 성적우수자는 대교협 '대입지원 상담프로그램'에서 추천대학 순위명부 우수자로 정한다.

- 라)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의 합산 점수가 동점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1)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방법에 따라 교과 영역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한다.
 - (2) 동점자가 나을 경우 1학기 추천은 2학년말, 2학기 추천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한다.
 - (3) 각 대학의 동점자 기준에 의한다.
- 마) 교과 성적을 우선하되 복수 추천에 의한 경합이 될 경우에 한 학생이 2개 대학까지만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안건 번호	11기-22년-58회-42호
----------	-----------------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제안년월일 : 2022.09.23.

제 안 자 : 교 장

소 관 : 행 정 실 장

1. 제안 이유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정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111조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인을 선임하고자 제안함.

2. 위원회의 구성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은 7인으로 구성

나. 구성단위별 정원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

-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중 2인

-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3인

3. 위원회의 운영 및 임기

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

나.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

4. 위원회의 기능

-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불임 1.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개방이사의 추천 · 임원)

3.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정관 24조의 2, 제24조의 3, 제111조

사립학교법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법인 044-203-6931, 재산 6933, 기타 6932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41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흘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3호, 2019. 3. 19.,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 044-203-602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법인 044-203-6931, 재산 6933, 기타 6930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개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1. 5.]

부칙 <제29623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

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정관-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06.12.29><개정 '07.8.22>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06.12.29><개정 '07.8.22>

③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06.12.29>

제24조의3(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06.12.29><개정 '07.8.22, 10.10.21>

② 추천위원은 7인으로 하고, 추천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06.12.29><개정 '07.8.22>

1.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2인
2.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
3.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1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10.10.21, '12.04.05>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신설 10.10.21>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0.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